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 28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 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

2. 주요골자

-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1,000인을 200인으로 개정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지방자치법 제13조의4,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
- 나. 입법예고(2002.8.19~2002.8.26)결과 : 의견없음.
- 다. 예산조치 : 없음.
- 라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1,000인”을 “200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 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 구연서 주민수는 20세이상 <u>1,000인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)<u>200인</u>.....</p>